

「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제 안 설 명

- 의안번호 제1142호 「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관련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- 본 조례안은
 -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제로페이)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,
 - 조례 부칙에 규정된 시립 장사시설의 사용료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,
 -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제로페이)의 제도 안착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-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